

해 외 직 접 투 자 신 고 서				처리기간
신 고 인	상 호	(주)한국무역	사 업 자 등 록 번 호	123-45-67890
			법 인 등 록 번 호	123456-1234567
	대 표 자	홍길동	주 민 등 록 번 호	123456-1234567
	소 재 지	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		전화번호 : 1566-5114
	업 종	제조업		
해 외 직 접 투 자 내 용	투 자 국 명	베트남	소 재 지	Thai Nguyen province
	투 자 방 법	지분투자	자 금 조 달	자기자금
	투 자 업 종	제조업	주 요 제 품	니켈
	투 자 금 액	US\$ 500,000	출 자 금 액	US\$ 500,000
	투 자 비 율	100%	결 산 월	1/4분기
	투 자 목 적	운영자금 외화송금서 상의 수취인명과 동일해야 함 → 상이할경우, 내용변경신고서 또는 추가서류제출		
	현 지 법 인 명 (영 문)	KITA VINA CO.,Ltd (자본금: 600,000 US\$)		
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	
				2014년 06월 27 일
기획재정부장관 귀하 (외국환은행의 장)				
위와 같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함		신 고 번 호	신고01AA해투1111111	
		신 고 금 액	USD 500,000	
		유 효 기 간	2015년 6월 27일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〇〇은행 〇〇지점 </div>		내용 반드시 기입 필		
은행명판+은행인감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		년 월 일 신고기관 : 기획재정부장관 (외국환은행의 장)		

- <첨부서류>
1. 사업계획서(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포함)
 2.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
 3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금전의 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서
 4. 해외투자수단이 해외주식인 경우, 당해 해외주식의 가격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- ※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코드(5자리) 및 업종명을 기재
 - ※ 출자금액란에는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액면가액을 기재

